

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

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73호, 2024. 12. 30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8838, 8834

I.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
(단위: 원)

구 분	보수액(월)	평균임금(1일)
1등급	2,440,633	80,240
2등급	2,932,530	96,410
3등급	3,424,430	112,580
4등급	3,916,320	128,750
5등급	4,408,220	144,920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